

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어업인 모집 공고

한국수산자원공단에서는 연안어업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어선청년임대사업 청년 어업인 희망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8일
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

1. 사업 개요

- (목적) 기존어업인의 연안어선을 어선어업을 희망하는 청년과의 매칭을 통하여 임차료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어선어업의 진입장벽을 낮추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연안어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- (사업내용)
 - ① 기존어업인의 어선(허가 포함)을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청년어업인에게 어선을 임대하며, 월 임차료의 50%를 공단에서 지원
 - ② 청년어업인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실습·어업인 멘토링, 전문분야별 컨설팅 등을 지원
 - 대상어선 : 전국 연안복합·연안통발·연안자망 어선
 - 임차료지원 : 어선임대차에 따른 월 임차료의 50%를 공단에서 임대인에게 대신 납부
 - 어선보험료 지원 : 임대용어선에 대한 어선보험 자기부담금 차등 지원
 - * 보험료 지원액수는 워크숍, 어획량 보고 등 사업 참여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어선사전실습 : 전문업체를 통한 체계적 현장 실습 병행 추진
 - 우수어업인 멘토링 : 대상자의 어업활동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역 우수어업인과 멘토링 체결하여 멘토와 함께 일정기간 어획활동 수행
 - 전문가 컨설팅 : 어업·수산자원·수산물 유통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
 - 조업현황 모니터링 : 청년어업인 조업현황 온라인 보고 및 안전 관리

2. 모집 개요

- (모집기간) '25. 3. 18.(화) ~ '25. 4월 14일(월)
- (선발인원) 50명 내외
 - * 예산상황에 따라 계약가능 어선 척수는 변동 가능
- (지원자격) 만 49세 이하(1976. 3. 18. 이후 출생) 대한민국 국적자
 - *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본인과 거주를 함께하는 가족의 명의로 어선주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없음
- (접수처) 한국수산자원공단 홈페이지(<https://www.fira.or.kr>)

3. 청년어업인 후보자 선정 방법

- (선정방법) 지원자 중 적격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 후, 면접을 진행하며, 지원자가 작성한 지원서와 어업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면접점수, 가점 등을 고려하여 계약후보자로 선정
 - 가점사항은 아래 표와 같음

구분	가점내용	점수
1. 항해자격	- 소형선박조종면허 또는 해기사(항해/어선) 6급이상 소지자 * 모집마감일('25.4.14.) 기준 소지자에 한함	3점
2. 연령	- 39세 이하 지원자(1986.3.18. 이후 출생자)	3점
3. 교육사항	- 귀어학교(지역무관) 수료(예정)자(모집마감일 '25.4.14.기준)	3점
	- 공단에서 실시한 청년어선임대사업 프로그램 수료자 - 귀어·귀촌 유관기관 온라인 교육이수자(모집마감일 '25.4.14. 기준)	
4. 승선경력	- 어업인확인서(모집마감일 '25.4.14. 기준) - 어선원보험 가입증명서(3개월 이상)	3점
	- 기타 선장 또는 어선원 경력을 3개월 이상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* 증명서 성격에 따라 어업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** 모집마감일('25.4.14.) 기준 확인 및 식별가능한 서류만 인정	

- 면접점수 100점 만점 60점 미만 취득자는 계약후보자 자격 없음
 - 면접일자와 장소는 해당 지원자에게 개별통보
 - 계약후보자에게는 공단이 보유한 어선현황을 제공하며, 공단에서 실시하는 이론교육 및 사전실습 수료 후 어선선택의 기회 부여
- (어선선택) 공단이 임대용어선 모집 현황과 어선별 선주 희망가격을 청년어업인에게 제시하고, 청년어업인이 계약대상 어선 선택

- 청년어업인이 선택한 어선에 대하여 선주와 임대차가격 협의
- 임대용어선 현황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임대용어선 모집현황 참조

4. 임대차 계약 체결 등

- 임대차계약은 공단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체결하되, 임대인(어선주)과 임차인(청년어업인), 공단이 모두 합의한 경우 특약 추가 가능
 - 임차료의 50%는 임차인이, 50%는 공단이 지급
 - * 임차인의 임차료 납부는 월납으로, 공단의 임차료 납부는 6개월 또는 연마다 납부를 기본으로 하며, 필요시 납부의 방법을 임대인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
 - 어선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임대인은 어선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,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해 신고하고, 어선보험 등에 가입
- 청년어업인 지원자 유의사항
 - 임대용어선으로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으로 사용 불가
 - 선정자 중 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전실습 미수료자는 임대차계약 미추진
 - 선정자는 어선임대차계약 체결일까지 어선이 속해있는 시도로 주소지 이전 완료하여야 함
 - 선정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차료의 본인부담분(50%)를 매달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고 공단에 보고해야함
 - 선정자는 어업활동을 영위하면서 공단에서 제공한 서식에 따라 어획량, 어획비용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
 - 5톤 이상의 연안어선을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 소형선박조종 면허 또는 해기사(항해/어선) 6급 이상 소지하여야 계약체결 가능
 - * 선박직원법 제4조,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2조 승무기준 [별표3]소형선박의 승무기준에 따름
 -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의 인척관계가 있는 경우 공단은 임차인과 임대인에 대하여 사업자격을 박탈하고 임차료를 회수할 수 있음

5. 문 의 처

- 한국수산자원공단 디지털어업관리실(☎ 051-718-2403, 2404)